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안내에 관한 공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니 해당 신고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2. 1. 20.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1. 신고기간 : 2022. 1. 21. ~ 2023. 1. 20.

2.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가. 진상규명 신고

- 신고자격 : ① 희생자 ② 유족 ③ 희생자 친족 ④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 신고장소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
- 제출서류 : 진상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나. 희생자·유족 신고

- 신고자격 :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
  -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 ▶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 ○ 신고장소

- (도내 거주자)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시군 여순사건담당, 읍면동 민원실
- (도외, 국외 거주자)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 제출서류

- ①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 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진단서(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 지정병원 발급)
- ②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 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보증서(별지 3호 서식)
- ③ 희생자(수형자)·유족 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보증서(별지 3호 서식)
- ④ 유족신고 : 희생자의 유족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희생자의 제적등본, 보증서(시행령 별지 3호 서식)

## 3. 신고방법

### ○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 서식 다운로드

- ▶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http://www.jeonnam.go.kr)) > 부서자료실 > 여순사건지원단
- ▶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누리집('22 2월 중 오픈)

## 4. 우편 접수처

### ○ 주소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 문의처 >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처리 지원단(02-2076-5300)]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061-286-7881~3)]
- 전라남도 내 시·군 여순사건담당 및 읍·면·동 민원실

## 진상규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사건번호	접수기관	접수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 ] 피해자 [ ] 친족 [ ] 경험·목격자 [ ] 기타( )				
사건 관련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당시 소속기관
피해자					
가해자					
사건 관련 기관					
발생일시 (시기)					
발생장소 (지역)					
경험자 또는 목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증거자료	자료명	내용			
진정·조사 여부	진정일	기관명	조사내용	조사결과	처리일

신고의 취지	
사건의 내용	
그 밖의 사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이 난은 신고인이 구술로 진상규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기록자 직 (서명 또는 인)

진상규명신고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1. 신고인의 “사건과의 관계”란은 진상규명 대상 사건과 신고인의 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2. “주소”란은 신고인의 현 주소를 기재합니다.
3. “사건관련자”란은 신고사건 관련자(피해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필요시 별지 작성)
4. “사건관련 기관”, “경험자 또는 목격자”, “증거자료”, “진정·조사 여부”란은 신고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신고의 취지와 사건의 내용(일자, 장소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신고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 남 [ ] 여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피해상황	발생 일시	당시 나이
주요 내용			

### 의료지원금 지급 검토사항

후유장애 내용	별지 제1호서식 3쪽 중 제2쪽에 작성	
향후 치료비	[ ] 필요	[ ] 불필요
간호비	[ ] 필요	[ ] 불필요
보조장구 구입비	[ ] 필요	[ ] 불필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후유장애인) 및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li> <li>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 여수·순천 10·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li> <li>다. 여수·순천 10·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li> </ul> </li> </ul> </li> <li>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li> </ol>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후유장애 내용

인적 사항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주소
	(            )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보증서

대상자 인적 사항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주소)	비고
	( )				
확인 사항	※ 사건 당시 상황(또는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술(증명자료 첨부 등)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보증인: 주소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남 [ ] 여
	신고사유	[ ] 사망	년 월 일 사망
		[ ] 행방불명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사망 (행방불명) 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2명 이상일 경우 별지 제3호서식(3쪽 중 제2쪽)을 사용)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한다. 가.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나. 여수·순천 10·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다. 여수·순천 10·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희생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고 사유	[ ]사망	년	월	일	사망	
	[ ]행방불명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사망(행방불명) 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희생자

성명(한자)		( )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고 사유	[ ]사망	년	월	일	사망	
	[ ]행방불명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사망(행방불명) 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희생자(수형자) · 유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 남 [ ] 여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피해상황	발생 일시	당시 나이
주요 내용			

수형사항 ※ 구체적인 경위는 별지 제4호서식 3쪽 중 제2쪽에 작성

형 신고일	복역 장소	형량	수형 내용	출소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수형자) 및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가.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나. 여수·순천 10·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다. 여수·순천 10·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형사실 내용

희생자 인적 사항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주소
	(            )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 남 [ ] 여
	희생 유형	희생자 결정일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유족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의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의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2.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 )		의			